
2022년 OK FTA 컨설팅(종합 & 서울 기초) 사업안내서

2022. 6. 10.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2년 OK FTA 컨설팅(종합 & 서울기초)
- (사업기간) 2022년 4월 ~ 11월 30일(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사업목적)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①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② FTA 활용 능력 제고, ③수출경쟁력 강화 달성
- (사업규모) 10억원(민간경상보조)
 - 전국대상 종합컨설팅 306개사(A유형)
 - 서울지역 대상 기초컨설팅 100개사(B~D유형)
 - *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기업수 변동 가능
- (지원대상) FTA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 ** 직전 2년('20~'21)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①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 또는 ②우리나라가 체결한 신규 FTA 협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 (지원분야)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종합* (전국)	A	종합 컨설팅	6~12일(필수 6+선택 4일) (비관세장벽 선택형 컨설팅** 2일)
기초 (서울)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	2일 (최대 5일)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컨설팅	2일 (최대 5일)
	D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컨설팅	3일 (최대 5일)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관리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외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을 지원(기업선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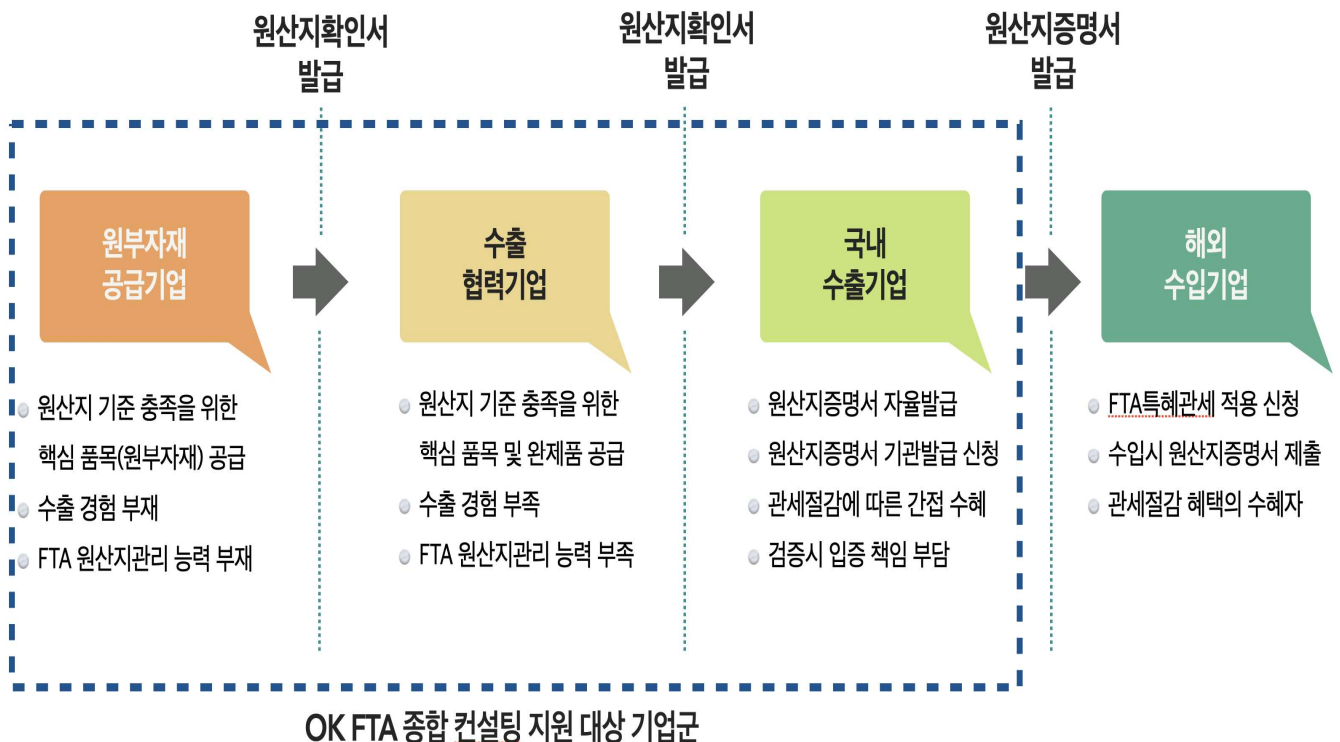
2

세부 컨설팅 유형

□ A유형 : 종합 컨설팅(원산지관리 최대 10MD + 비관세장벽 2MD 지원)

- (지원 대상) 수출기업과 전국에 산재한 수출협력기업의 공급망(SCM)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FTA활용 능력을 제고(전국단위 컨설팅)
 - * 종합컨설팅은 기초컨설팅 지원기업수를 토대로 산출한 **지역별 한도를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하되, 지역별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청이 미달한 지역 한도를 활용 가능
- (공급망 지원) 수출기업의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필수적인 협력기업을 동시에 지원하여 실질적인 FTA활용도 제고
- (수출기업화 촉진) 非제조 수출기업과 제조기업 동반 지원으로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와 제조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스타트업 지원) 아이디어를 토대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위탁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스타트업의 FTA활용을 위한 스타트업, 협력기업 동반 지원 가능

<종합컨설팅 지원 대상>



- (상세 프로그램) 기업의 자체 FTA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필수컨설팅(6MD)**과 **기업선택형 컨설팅(최대 4MD)**, 해외인증·지재권 진단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 필수컨설팅을 통하여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준비 등 전문 컨설팅과 기업의 원산지관리자 교육을 병행
 - 선택형 컨설팅으로 추가 품목 지원, **인증수출자(업체·품목) 취득**,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비관세 장벽인 해외인증·지재권 관련 진단 컨설팅을 제공

<종합 컨설팅 상세 프로그램>

구분	컨설팅 항목	주요 컨설팅 내용	예정일수 (방문 여부)
· 필수컨설팅 (6MD)	- 기업진단	· 주요 생산품목 확인 · 주요 수출국가, 수출금액 확인 · 수출 전문성 및 원산지관리 실태 확인	· 0.5MD (방문)
	- 품목분류	· 수출제품의 품목분류(HS 6단위, 4개)	· 1.5MD (방문)
	- FTA관세 절감 실익 확인	· 발효 협정 전체기준 관세 절감 실익 확인 (MFN, WTO, FTA특례세율)	· 0.5MD
	-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관세절감의 실익 존재하는 협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0.5MD
	- 원산지 판정	· 협정·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 핵심 부품 원산지관리 전략 제시	· 1.0MD
	- 원산지 증명 발급 교육 (FTA활용능력 강화) -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지원	· FTA협정, FTA관세법 등 활용 개념 스터디* · 원산지관리 담당(전담)자 및 서명권자 관리 · 원산지증명(확인)서, 소명서 작성 사례 연습 · 원산지 판정 및 시스템 활용 교육 ·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 사례 연습	· 1.0MD (방문)
	- 기업별 FTA활용 매뉴얼 제작	· 기업진단~원산지증명발급 산출물을 토대로 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전용 매뉴얼 제작	· 1.0MD
· 기업선택형 컨설팅 (4MD)	- 품목 추가 컨설팅	· 품목수 증가時 품목당 1MD 추가 · 부품수 100개 이상시 해당 품목당 1MD추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2MD)	· 2.0MD (1MD 방문)
	-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 업체별(2MD)·품목별(1MD)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 1.0MD ~2.0MD
	-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준 모의 검증 수행 · 취약점 점검 리포트 작성 및 대안 제시	· 1.0MD (방문)
· 인증·지재권 (2MD)	- 해외인증·지식재산권 컨설팅	· 해외 인증 취득 관련 진단 컨설팅 · 지식재산권 확보 관련 진단 컨설팅	· 2.0MD

□ B유형 :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발급 지원 컨설팅(서울지역, 2~5MD)

컨설팅 항목	주요 컨설팅 내용	수행일수 (방문여부)
- 기업진단 및 품목분류	· 주요 생산품목 확인 · 주요 수출국가, 수출금액 확인 · 주력 수출제품의 품목분류(HS 6단위, 2개)	· 0.5MD (방문)
- FTA관세 절감 실익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발효 협정 전체기준 관세 절감 실익 확인 (MFN, WTO, FTA특례세율)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0.5MD
- 원산지 판정	· 협정·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 핵심 부품 원산지관리 전략 제시	· 0.5MD
- 원산지 증명 발급 (FTA활용능력 강화)	· 원산지관리 담당(전담)자 및 서명권자 관리 ·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례 연습 · 원산지소명서 작성 사례 연습 ·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 사례 연습	· 0.5MD (방문)
- 품목 추가 컨설팅(선택형)	· 품목수 증가時 품목당 1MD 추가 · 부품수 100개 이상시 해당 품목당 1MD추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2MD)	· 3.0MD (1MD 방문)

□ C유형 :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발급 지원 컨설팅(서울지역, 2~5MD)

컨설팅 항목	주요 컨설팅 내용	수행일수 (방문여부)
- 기업진단 및 품목분류	· 제품 공급기업의 주요 수출국 및 활용 협정 · 주력 제품의 품목분류(HS 6단위, 2개)	· 0.5MD (방문)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0.5MD
- 원산지 판정	· 협정·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 핵심 부품 원산지관리 전략 제시	· 0.5MD
- 원산지 확인서 발급 (FTA활용능력 강화)	· 원산지관리 담당(전담)자 및 서명권자 관리 · 원산지확인서 작성 사례 연습 · 원산지소명서 작성 사례 연습	· 0.5MD (방문)
- 품목 추가 컨설팅(선택형)	· 품목수 증가時 품목당 1MD 추가 · 부품수 100개 이상시 해당 품목당 1MD추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2MD)	· 3.0MD (1MD 방문)

□ **D유형 :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컨설팅(서울지역, 3~5MD)**

컨설팅 항목	주요 컨설팅 내용	수행일수 (조정 가능)
- 기업진단 및 품목분류	· 주요 생산품목 확인 · 주요 수출국가, 수출금액 확인 · 주력 수출제품의 품목분류(HS 6단위, 2개)	· 0.5MD (방문)
- FTA관세 절감 실익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발효 협정 전체기준 관세 절감 실익 확인 (MFN, WTO, FTA특례세율)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0.5MD
- 원산지 판정	· 협정·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 핵심 부품 원산지관리 전략 제시	· 0.5MD
-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2개 품목 * 원산지충족 협정)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종합컨설팅만 가능	· 1.5MD (0.5MD 방문)
- 품목 추가 컨설팅(선택형)	· 품목수 증가時 품목당 1MD 추가 · 부품수 100개 이상시 해당 품목당 1MD추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2MD)	· 2.0MD (1MD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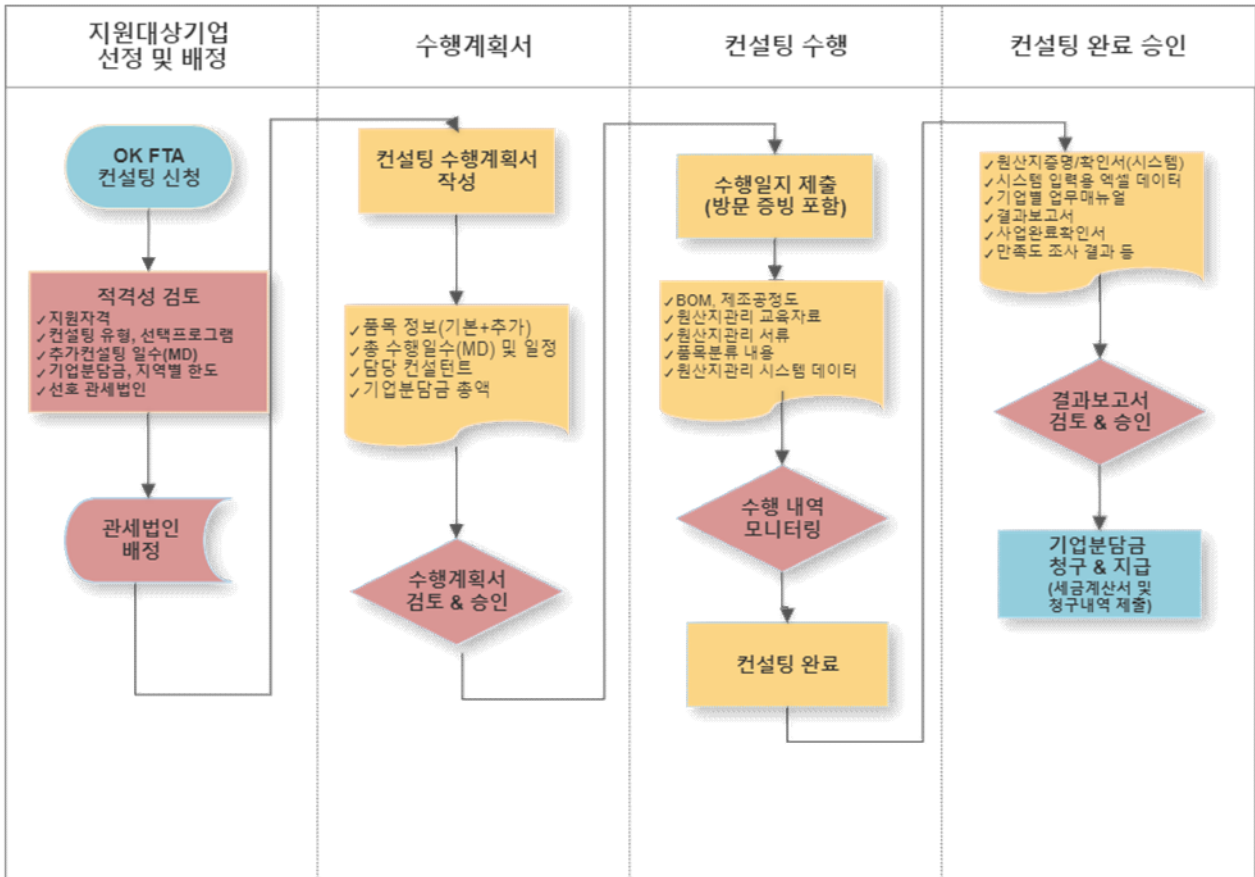
3

사업절차 및 신청 방법 등

□ **사업 진행절차**

- 지원대상기업 모집 : 2022. 4월 ~ 10월(예산미소진時 11월), OK FTA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 시행
- 적격성 검토 : FTA종합지원센터가 지원대상 여부, 직전년도매출, 기업분담비율, 컨설팅 유형 및 선택 프로그램 등을 확인
- 관세법인 배정 : 지원대상기업의 선호를 토대로 관세법인(A~H) 배정
- 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 관세법인이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승인 후 컨설팅 착수
- 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승인 : 수행일지, 결과보고서를 전수 검사하여 보완 사항 통보 및 승인 여부 판정
- 대금 지급 등 사업 정산 : 1~3차 대금 지급 및 최종평가 위원회 개최

<OK FTA 컨설팅 사업 진행 절차>



□ 지원대상기업 신청방법 및 자격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 전주기 FTA플랫폼(<http://okfta.or.kr>)을 통해 접수

- (이메일 송부) okfta@kita.net으로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사업신청 제출서류>

신청	▶ 참가신청서 1부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 (신청자격 및 업체 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1) 중소기업(공정위 공고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2년 내('20~'21)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 ①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에 따라 HS 6단위 기준 품목 추가 ② 우리나라가 체결한 신규 FTA 협정이 추가될 경우 상기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업체 분담금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50억원 미만 : 무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20% 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30% ⑤ 1,000~1,500억원 미만 : 40% ⑥ 1,500억원 이상 : 50% ※ 업체분담금은 지원금액 총액 기준으로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 총지원금 240만원, 부담률 10%일 경우 24만원으로 계산

□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배정

○ 총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으로 선정

* 종합컨설팅은 기초컨설팅 지원기업수를 토대로 산출한 지역별 한도를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하되, 지역별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청이 미달한 지역 한도를 활용 가능

<종합컨설팅 지역별 한도>

서울	52개사	부산	12개사	인천	20개사
대구	17개사	대전	9개사	광주	10개사
울산	9개사	경기	52개사	경남	22개사
경북	28개사	충남	15개사	충북	13개사
전남	13개사	전북	10개사	강원	12개사
제주	5개사	세종	7개사	합계	306개사

- 지원대상기업은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 직접 선택 가능하며, 미 선택시 FTA종합지원센터가 산업/품목을 고려하여 배정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 리스트>

순번	관세법인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A	뮤추얼스탠다드	김우석 관세사	http://mutualstandard.com/
B	드림	신성훈 관세사	http://www.drcus.co.kr/
C	씨티엘	이은주 관세사	https://ctlcustoms.com/Default.asp
D	에이스	임정복 관세사	http://www.acecustoms.co.kr/rkdk/rkr.asp
E	우신	강철순 관세사	http://www.wscustoms.co.kr/kor/main/
F	선율	남성철 관세사	http://the-yul.com/
G	세주	이재준 관세사	http://www.sejucustoms.com/rkdk/rkr.asp
H	온유	김승한 관세사	신규설립법인, 홈페이지 작업중

□ 컨설팅 수행 관리

- (적격성 진단)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 착수에 앞서 제출서류 검토 및 기업 컨택 등을 통해 적격성 사전진단 실시
- (사업수행계획 승인)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은 기업별 컨설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FTA종합지원센터에 제출, 승인된 수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과업 수행
- (컨설팅수행계획 공유) 지원대상기업이 컨설턴트의 업무 수행 계획, 총 수행MD, 현장방문 횟수, 컨설팅 대상 품목, 총지원금액 및 기업의 자부담금액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송부 예정

/끝

2022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①기업명		②대표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업종·업태				
⑤사업장 주소	본사 ()	컨설팅 희망장소 (택1)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공장				
	공장 ()					
⑥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small>(공정위 최근공고 확인)</small>	<input type="checkbox"/> 해당	⑦전년도 매출액	원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⑧상시 근로자수	명			
⑨컨설팅 비용부담 <small>* 업체부담 비율 (2021년 매출액 기준)</small>	[업체분담비율: 택1]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30% <input type="checkbox"/> 40% <input type="checkbox"/> 50%					
	매출액 (2021년 기준)	50억 미만	50~100억 미만	100~500억 미만	500~1,000억 미만	1,000~1,500억 미만
⑩FTA활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활용(국가:) <input type="checkbox"/> 미활용(활용예정 국가:)					
⑪ 종합센터 지역센터 FTA 컨설팅 수혜여부	<input type="checkbox"/> 최근 2년(2020~2021년도) 내 컨설팅 수혜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수혜 없음					
⑫컨설팅 신청 품목 및 HS 6단위 <small>* 컨설팅 유형별로 컨설팅 지원 가능한 품목 수 상이</small>	NO	HS 6단위	품명(한글 or 영문)	Model No		
	1					
	2					
	3					
	4					
	5					
	6					
⑬수출실적(US\$) <small>* FTA제결국 수출실적 있을 경우 별도 기재</small>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1년(1-12월) 예상금액 또는 실적금액(계약서 등 증빙)					
⑭매출 형태	<input type="checkbox"/> 직수출 <input type="checkbox"/> 상사수출 <input type="checkbox"/> 국내공급(로컬수출) <input type="checkbox"/> 국내공급(내수용)					
⑮인증수출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업체별(인증번호:) <input type="checkbox"/> 품목별(인증번호:) <input type="checkbox"/> 없음					
⑯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⑰ FTA 관리현황	전담인력	<input type="checkbox"/> 유 (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무				
	원산지 관리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사용 (시스템명 :)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2. 컨설팅 신청 유형

⑱ 희망 유형 (택1)	<input type="checkbox"/> A 유형(종합 컨설팅)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포함
	<input type="checkbox"/> B 유형(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input type="checkbox"/> C 유형(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input type="checkbox"/> D 유형(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3. 지정희망 관세법인(컨설파트) *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컨설파트 기재(모르는 경우 '빈칸')

⑲지정희망 수행기관 **수행기관명(관세법인)**

산업부 '22년도 FTA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2022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장 귀하

직인명판

첨부 서류 1. 사업진행 동의서 1부 / 2.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제품설명서(카달로그 등) 1부 / 5.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1부 / 6. (중복수혜기업의 경우) 과거 컨설팅 내역

「OK FTA 컨설팅」 신청 및 사업진행 동의서

동의서는 성공적인 컨설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 됩니다.

_____ (←기업명 기재) 는 성공적인 『OK FTA 컨설팅』진행을 위
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① 우리 회사는 FTA 활용 컨설턴트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컨
설팅 지원을 받을 것이며 최소 1인에 대해서는 피교육자로 지정하여 컨설팅
기간 중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및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착수 단계에서 진행되는 CEO 인터뷰 또는 보고회에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겠으며,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업
분담금(0~50%)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③ 컨설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FTA종합지원센터가 참여를 권유하는 행
사 및 교육(설명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언론 홍보,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

④ 본 컨설팅 관련 FTA종합지원센터와 컨설턴트의 요청에 대하여 불성실하
게 응할 경우 진행 중인 컨설팅이 중단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및 유관
기관 등이 주관하는 유사사업에서 배제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당사의 대표는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OK FTA 컨설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